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00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20일

발의자 : 정혜영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 다.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홍보 및 표창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받춰서 : 덧붙임

라. 기타사항 : 덧붙임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11. 24. 예고 예정

○ 의견내용 : 의견접수 결과 수정사항 있을 시 재배부 예정

바. 부서협의 결과(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서검토 중

→ 협의결과 수정사항 있을 시 재배부 예정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

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23. 11. 14.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06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4-19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5-11	주민복지국 동행과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13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5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25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5-04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7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9-27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8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	2023-09-27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9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	2023-04-17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10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8-07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1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11-02	복지국 복지정책과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12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13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11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10-30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15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17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1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12	주민복지과	
17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12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1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13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19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9-11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07-14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